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4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·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고,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24시 비대면 민원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수료 면제대상 추가(안 제6조제5항 신설)

- ⑤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.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
- 2)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 ~ 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「 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 」 <u>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</u> <u>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</u> <u>수수료를 면제한다. 다만, 다른</u> <u>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</u> <u>민원문서는 제외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징수과 안양순
연 락 처	02-3153-8791